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국립고궁박물관장

1. 최종합격자

직급 (직종)	근무예정지	채용분야	응시번호
연구원 (기간제)	국립고궁박물관	교육 운영	4번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응시번호로 식별합니다.

2. 임용일 : 2022. 8. 16.(화) (예정)

3.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기한: **2022. 8. 10.(수)까지(기한엄수)**

나. 제출서류

-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붙임1)
* 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반드시 제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④ 최종학력증명서
- ⑤ 결격사유확인서 (붙임2)
- ⑥ 신원진술서(약식) 2부 (붙임3)
- ⑦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붙임4)
- ⑧ 반명함판(3×4cm) 사진 이미지 파일(jpg) * 이미지 파일 없는 경우 사진 3매 제출
- ⑨ 통장사본 1부
- ⑩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다. 접수처: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채용 담당자 앞

- 주소 : (03045)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 전자우편 : jingle48@korea.kr

4. 공지사항

- 가.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 나. 신원조회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3701-7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결격사유확인서 1부.
3. 신원진술서(약식) 1부.
4.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끝.

(붙임 2)

결격사유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본인은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확인자: (인)

문화재청장 귀하

